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6. 11. 2.
발 의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경위

2006.11.2.제12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성희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06.10.17 대통령령제19702호)되어 국내여행을 할 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내여행을 할 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20,000원으로 인상함. (안 별표1)

4.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2006.5.24 법률제7957호) 제32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2006.10.17 대통령령제19702호) 제15조

5. 개정조례(안) : 별첨

6.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의원의 현지교통비(1일당)란중 "10,000" 을 "20,000" 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 1.중 "출석" 을 "출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1항 관련)

(단위:원)

지급액 /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1일당)	숙박비(1일당)	식비(1일당)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 3.(생략)

개 정 안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1항 관련)

(단위:원)

지급액 /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1일당)	숙박비(1일당)	식비(1일당)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 출장 ----------
---------- 출장 ----------출장

---

2. ~ 3.(현행과 같음)